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자체점검 수행 의무화〉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0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13.
3. 회부연월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을 1조(組)로 편성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및 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승강기 자체점검(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략) <u><신설></u>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자</u>
14. ~ 20. (생략) ③ ~ ⑤ (생략)	14.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승강기 보유 현황은 885,904대로 파악됨.

[승강기 설치 현황(2025.12.31. 기준)]

승강기 종류						전년대비 증가대수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소형화물용	휠체어리프트	합계	
793,268	39,163	41,935	6,736	4,802	885,904	19,235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현행법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¹⁾.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조사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교육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특히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승강기의 관리주체²⁾ 또는 유지관리업자³⁾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⁴⁾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1차적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승강기 소유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위임되어 있는데,

기존 운영규정은 자체점검에 투입되는 점검반의 구성을 단순히 2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나,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는 작업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정한 구역(예 : 아파트 단지)을 기준으로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자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는 작업 단위를 ‘승강기별’로 명확히 하여 한 대의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이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명확히 하였음.

[운영규정 개정 전후 변화]

개정 前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u>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
개정 後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호)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승강기별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u>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함에 따라 실제 자체점검 현장에서 승강기별로 2명 이상을 1조의 점검반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체점검 점검반의 구성 원칙을 법률에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승강기 기술자 및 해당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특히, 승강기 안전사고 관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2019-2024년) 동안 승강기 기술자 사고 건수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어 승강기 기술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07-2024년 승강기 안전사고 피해자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이용자	건물 관리자	승강기 기술자
2024년	48	38	0	10
2023년	43	37	1	5
2022년	56	50	1	5
2021년	80	62	4	14
2020년	91	72	5	14
2019년	77	65	3	9
2018년	24	24	0	0
2017년	29	29	0	0
2016년	45	43	0	2
2015년	66	58	4	4
2014년	80	78	0	2
2013년	130	124	2	4
2012년	170	165	4	1
2011년	122	118	2	2
2010년	176	170	5	1
2009년	132	125	5	2
2008년	182	175	2	5
2007년	108	105	2	1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다만, 개정안은 점검반을 구성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태료 규정 상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도 불명확하므로 점검반의 구성 주체를 명시하여 법 문언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이라는 개정안의 표현은 하나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수행할 승강기가 여러

대인 경우, 해당 대수에 2명 이상의 인원을 곱한 수 만큼 점검반 구성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운영규정과 같이 “승강기별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관리 주체나 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한 인력 수와 관계없이 2인 1조의 점검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승강기 자체점검(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제4항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별로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u>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입법조치로서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